

● 제6장 세무행정

- 제1절 세무행정 관리
- 제2절 지방세입 관리
- 제3절 과년도 체납세 정리
- 제4절 세외수입 관리
- 제5절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리

제1절 세무행정 관리

1. 세입환경

가. 과세물건 현황

- 토 지 : 65.2km² 【전 1.0 / 답 3.6 / 임야 40.9 / 대지 6.9 / 공장 0.5 / 기타 12.3km²】
- 건축물 : 91,300건 【주 거 용 : 74,993건, 일 반 용 : 16,307건】
- 차 량 : 84,309대 【승용 64,903 / 승합 4,712 / 화물 14,110 / 기타 584】
- 법 인 : 2,380개소 【건설 499 / 제조 536 / 서비스 413 / 여객,화물 148 / 기타 784】
- 기 타 : 선박 【50척】 , 골프회원권 【2,352명】 , 면허건수 【17,465건】

나. 세무공무원 기구 및 인력

- 기 구 : 7담당
- 담당별 분장사무
 - 세 무 관 리 : 세정기획 및 총괄, 세무조사, 구세(감면)조례
 - 재 산 세 : 재산세 과징, 현년도 체납액 정리, 세표, 중부세관련 업무
 - 취 득 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징 및 현년도 체납액 정리
 - 주민자동차 :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과징
 - 세 외 수 입 : 세입금관리 및 통계, 지방세 소인, 과오납금 환부
 - 체 납 정 리 :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납세증명 민원
 - 과 표 평 가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과세표준액 결정
- 인 력 : 41명
- 구성현황 : 행정 3(5급1, 6급1, 8급1), 세무 37(6급10, 7~9급27), 사무운영 1

구분 \ 직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2	1	9	13	17	2
현 원	41	1	11	25	3	1
증 감	△1	0	2	12	△14	1



2. 지방세 과징 일반

가. 조세의 분류

조세	지방세	구 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보통세
		광역시세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보통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국 세	내국세, 관세	국가 일반재원 조달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개발재원 조달		

나. 주민 1인당 담세액 [1인당 담세액=결산시점의 징수액÷결산시점의 인구수]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인 구 수(명)	253,526	255,419	254,720	255,798	251,651
지방세액(천원)	151,514,520	158,201,436	150,427,311	146,678,116	110,124,589
담 세 액(천원)	598	619	591	573	437

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 부 방 법		납 기	비 고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분	신고납부	◆ 등기·등록전	구세
		정기분	보통징수	◆ 매년 1. 16. ~ 1. 31.	
		수시분	신고납부	◆ 면허증서 받기 전	
레저세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 매년 7. 1. ~ 7. 31.	구세	
	균등분	보통징수	◆ 매년 8. 16. ~ 8. 31.		
재산세	주택·건축물분	보통징수	◆ 매년 7. 16. ~ 7. 31.	구세	
	주택·토지분	보통징수	◆ 매년 9. 16. ~ 9. 30.		
자동차세	소유분	제1기분	보통징수	◆ 매년 6. 16. ~ 6. 30.	
		제2기분	보통징수	◆ 매년 12. 16. ~ 12. 31.	
지방소득세	주행분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종업원분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소득분	소득세분	신고납부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분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자원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특정부동산	보통징수	◆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시		
	보통징수		◆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시		

3. 지방세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법인, 백만원)

조사계획		조사 법인	추징 계		방문조사		서면조사		비율 (B/A)%
법인	세액(A)		법인	세액(B)	법인	세액	법인	세액	
66	570	66	42	339	11	210	31	129	59.5

나. 세무조사 운영

- 부동산 취득 법인 및 3년 이내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및 탈루 취약 부분 기획조사로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
-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른 조사시기 조율로 법인 운영의 안정화

4.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 근거규정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08.7.제정)

가.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 **【2013.1.1기준 / 최근 3년간('10~'12년) 매년】**

- 법 인 : 납부건수 3건이상, 납부실적 2,000만원 이상
- 개 인 : 납부건수 3건이상, 납부실적 200만원 이상

나. 우리구 성실납세자 선정 결과 : 전체 870명(법인 64명 / 개인 806명)

- 최고액 납세자
 - 법 인 : (주)000, 3년간 총 납부액 8,233백만원
 - 개 인 : 김 0 0 , 3년간 총 납부액 1,433백만원
-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내용
 - 부산은행, 농협 등 市 금고를 통한 대출·예금금리 우대 적용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시 보증수수료 0.1% 경감

5.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 운영

가. 건물 시가표준액 열람 서비스 제공

-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시스템 구축
- 실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편익 증대 및 정보화도시 금정구 이미지 제고

나.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

- 지방세 방문납세도우미 운영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납세불편 해소
- 스마트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세정 서비스 제고



제2절 지방세입 관리

1. 지방세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현년도 지방세	140,558	154,183	149,374	106.3	96.9		
지방세 현년도	시세	시세 소계	106,275	118,254	114,185	107.4	96.6
		취득세	31,438	34,032	33,769	107.4	99.2
		주민세	854	954	841	98.5	88.2
		자동차세	13,889	15,348	13,904	100.1	90.6
		레저세	18,755	17,351	17,351	92.5	100.0
		지방소득세	26,545	28,780	27,150	102.3	94.3
		지역자원시설세	2,882	3,043	2,951	102.3	97.0
		지방교육세	11,912	18,746	18,219	152.9	97.2
	구세	구세 소계	34,283	35,929	35,189	102.6	97.9
		등록면허세	4,882	5,121	5,095	104.4	99.5
		재산세	26,937	28,139	27,436	101.9	97.5
		주민세	364	392	384	105.5	97.9
		지방소득세	2,100	2,277	2,274	108.3	99.8

2. 지방세 징수실적 분석

가. 시세입 동향

-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취득세입 감소
- 법인세 등 국세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입의 소폭 감소
-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타 市세입은 예년대비 평균 진도비 유지

나. 구세입 동향

- 대형APT(장전쌍용예가 등) 신축 등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증가
-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예년대비 평균 진도비 유지

제3절 과년도 체납세 정리

1. 체납세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

지 방 세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지 방 세	과년도 총계	1,639	6,346	2,140	130.6	33.7	
	과 년 도	시 세	1,276	5,166	1,690	132.4	32.7
	구 세	363	1,180	450	124.0	38.1	

2.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적

가.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시책

-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 강화
 - 지방세 체납액정리 징수전담반 운영 : 26,950건 4,332백만원 전담
 -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운영 : 3,594건 3,572백만원 전담
 - 체납차량 번호판 상설영치 기동팀 운영 : 4,790대 1,701백만원 영치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상반기(5-7월), 하반기(12-2월)
 - 내 용 : 5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로 징수율제고
 - 직장인 체납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 금융자산 압류 : 금융연합회 계좌조회 및 예금압류
 - 지방세 및 국세 환급금 압류 : 환급금 압류 및 추심

나.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적

-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
 - 독 축 장 발 부 : 470,023건 589백만원 징수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7,965건 1,024백만원 징수
 - 차 량 번 호 판 영 치 : 4,670대 812백만원 징수
-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 663건 166백만원 징수



제4절 세외수입 관리

1. 세외수입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

세 목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대	
세외수입	총계	36,188	62,935	49,856	137.8	79.2	
	현년도	시세외	649	1,542	1,496	230.5	97.0
		구세외	34,406	49,455	47,405	137.8	95.9
	과년도	시세외	33	378	25	75.8	6.6
		구세외	1,100	11,560	930	84.5	8.0

2. 세외수입 세입운영

가. 세외수입 세입 극대화를 위한 추진시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극 운용(과태료 체납자)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최고 77%)
 - 체납자 체납내역 신용정보기관 등록(1,000만원 · 1년이상 체납)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500만원이상 체납)
- 500만원이상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처분
 - 부동산 공매 확행으로 체납액 환가 : 이행강제금
- 직장인 체납자 : 직장 조회 및 급여압류
-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년4회) 개최 및 부서별 체납정리실적 평가
- 분임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체납처분 기법 교육 실시

나.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적

- 재산압류 : 부동산 405건 284백만원, 차량 38,929건 1,962백만원
- 급여 압류 및 환가 : 541건 52백만원 징수
- 과년도 세외수입 고액체납자(100만원이상) 세무과내 전담 징수체계 구축 운영

다. 세외수입 과징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 세외수입 간단납부 시행 ⇒ 2013.12월부터 시행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이 관한 법률 제정 ⇒ 2013.8.7 제정, 2014.8.6 시행

제5절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리

1.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조사 및 산정		공 시		비 고
	주택수	주택가격	주택수	주택가격	
2013년	17,891	1,632,724	16,869	1,591,093	
2012년	17,940	1,567,350	16,916	1,527,541	
증감비율	-0.3%	4.2%	-0.3%	4.2%	

2.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공시 체계 구축

- 2013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공시 : 총 17,891호 산정 16,869호 공시
- 기타 물건 가격 조사 : 건물 시가표준액, 골프회원권 등 10종
- 2013년 차질 없는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추진사항
 - 주택특성 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 2회(1.1기준, 6.1.기준)
 - 전년대비 11%이상 가격 증감 주택 조사 및 분석 : 총387호
 - 비교표준주택 선정 : 807호
 -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 총2회
 -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없음
- 주택가격 열람 민원을 위한 편의시책
 - 주택가격현황도면을 활용한 입체적 민원서비스 제공
 - 주택가격 민원상담 전용 창구 운영 : 3회, 3개월간 운영
 - 재산세 과징과 연계한 민원처리 일원화로 대민 신뢰도 제고

3. 주택가격 산정체계의 효율적 개선

- 정확한 부동산 가치를 적기 반영하는 평가체계 개선
- 건물 과표의 수시조정을 통한 실거래가의 적시 반영
- 시설물 및 기타 물건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 도면 전산 처리 및 항공·영상자료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